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3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5. 24.
4. 회부일자 : 2019. 5. 30.

II . 제안이유

-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26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 및 교육부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III . 주요내용

1.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의2 신설)
2.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3.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운영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조례안 별첨 6]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제2항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조례안 별첨 2]

3.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대비표 : [조례안 별첨 1]

나. 입법예고(2019. 4. 25. ~ 5. 15.) : [조례안 별첨 3]

다.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 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조례안 별첨 5]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36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협동조합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현황과 조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26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설정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등 학교협동조합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6,53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 바,¹⁾ 이러한 학교내 협동조합의 확대는 교육영역에 있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자리잡았으며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도 지난 2015년 10월 8일 민주시민교육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현황 참고(<http://www.coop.go.kr/COOP/main.do>).

의 확대와 학생복지와 교육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축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협동조합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은 2015년 5곳에서 현재 26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붙임〕참고).

[표1] 학교급별 현황

(‘19.10.1. 설립인가 기준)

급별	초			중		고			기타			계
	방과후	매점	계	매점	계	매점	진로	계	매점	진로	계	
개수	6	1	7	4	4	10	3	13	1	1	2	26

[표2] 조합원별 현황

(‘19.10.1. 기준)

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계
조합원 수(명)	1,173	781	321	316	2,591
비율(%)	45.3	30.1	12.4	12.2	100

- 한편 교육청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의 확대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의 운영과 연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 1일부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m²)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예정)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105,44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그러나 동 지원센터는 법령 또는 조례상에 별도의 근거 없이 설치·운영됨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축소·폐지 등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어,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센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내부논의가 있어왔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확대에 발 맞추어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존립근거와 기능 등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문별 검토와 민관위탁 근거규정의 부재 문제

- 동 개정조례안은 제8조의2에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면서 교육감에게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제8조의3에서는 동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학교협동조합 신규 설립·운영 컨설팅 등 학교협동조합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의4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상기한 개정사항들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행 학교협동조합의 대부분이 매점위주의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고 학생참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사회적 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로 보이고, 특성화고의 경우 진로직업형 협동조합과 같은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의 [표1] 참고, 매점 16개, 방과후 6개, 진로형 4개)

또한 학교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졸업하는 학생 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2018년 학교협동조합 고등학교별 총회 참석률²⁾

학교		참석자 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합계
독산고 (18.5.24)	참석자수	63	13	18	15	109
	당시 조합원수	82	23	26	27	158
	참석률	77%	57%	69%	56%	69%
삼각산고 (18.4.13) *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 수	18	3	8	4	33
	당시 대의원 수	18	5	7	3	33
	참석률	100%	60%	114%	133%	100%
삼성고 (18.5.16)	참석자수	71	6	7	30	114
	당시 조합원수	97	9	17	79	202
	참석률	73%	67%	41%	38%	56%
선사고 (18.5.3)	참석자수	75	30	14	10	129
	당시 조합원수	93	34	42	23	192
	참석률	81%	88%	33%	43%	67%
가재울고 (18.5.28)	참석자수	57	10	12	2	81
	당시 조합원수	71	12	14	6	103
	참석률	80%	83%	86%	33%	79%
계성고 (18.4.18)	참석자수	27	2	8	3	69 (참석40+ 위임 29)
	당시 조합원수	56	33	20	3	112
	참석률	48%	6%	40%	100%	61%

- 한편 동 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동 개정조례안 제8조의3은 학교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는 ‘학교 내 협동조합’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2일 국내 최초로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유치원’이 개원한 만큼

2) 대상학교는 협동조합 설립 순으로 임의적으로 6개교 선정.

향후 학교법인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방식의 학교’에 대한 동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교육청이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후,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안건16-0006, 2016.2.24./17-0122, 2017.5.24.)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금번 회기내에 동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허용할 것이라면, 동 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2제2항을 [표4]와 같이 신설하여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4]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정안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학교협동조합 현황

연번	급별	설립별	지원청	학교명	협동조합명	조합사업	조합원수 전체(학생)	설립 인가
1	중	공립	남부	영림중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63 (79)	13.09.03.
2	고	공립	남부	독산고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66 (83)	14.08.19.
3	고	공립	성북강북	삼각산고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46 (139)	15.02.25.
4	고	공립	강동송파	선사고	선사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95 (96)	15.10.02.
5	고	공립	동작관악	삼성고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6 (101)	15.08.25.
6	중	공립	동작관악	국사봉중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72 (67)	16.02.02.
7	고	공립	서부	가재울고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05 (68)	16.02.15.
8	초	공립	북부	월천초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36 (0)	16.03.11.
9	초	공립	강서양천	양화초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30 (0)	16.06.27.
10	고	사립	성북강북	계성고	계성셋별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30 (75)	16.07.28.
11	중	공립	성북강북	길음중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61 (87)	16.08.26.
12	초	공립	강동송파	신천초	신천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54 (0)	16.09.07.
13	중	공립	남부	한울중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94 (48)	16.09.20.
14	초	공립	성동광진	금북초	금북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04 (0)	16.10.24.
15	고	공립	성동광진	성수공고	성수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진로형	15 (10)	17.03.28
16	지역 교육 청	공립	서부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 터	누림 사회적협동조합	진로형	16 (0)	17.04.12
17	고	사립	동작관악	광신정보산업고	광신정산고 사회적협동조합	진로형 (매점)	45 (17)	17.08.23
18	초	공립	남부	천왕초	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44 (21)	17.10.26
19	특수	사립	강남서초	밀알학교	밀알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60 (34)	17.11.27
20	초	공립	중부	남산초	서울남산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4 (0)	18.01.10
21	고	사립	중부	성심여중·고	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175 (102)	18.01.24.
22	초	공립	강동송파	성일초	성일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5 (13)	18.03.30.

23	고	공립	성동광진	금호고	금호고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78 (47)	18.04.25.
24	고	사립	서부	선일이비즈니스 고	무한창업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 교 사회적협동조합	진로형 (e-biz)	43 (34)	18.09.03.
25	고	공립	남부	구로고	구로고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42 (22)	19.04.05.
26	고	공립	성동광진	도선고	도선고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62 (30)	19.07.18.
계		공립 21 사립 5		초7 중4 고13 지역청·특수 2			2,591 (1,173)	

관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